

농무부(USDA), GMO 의무 표기안 확정 발표

LA지사

GMO 식품 표기법 최종 확정안 발표

- 지난해 12월 20일, 미 농무부(USDA)가 GMO 식품 표기법의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이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시켜 만든 식품으로, 콩, 옥수수, 감자 등 농작물의 면역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품종을 개량한 작물을 원료로 한다.

GMO 식품 표기법과 예외 대상

- 법안에 따라 GMO로 만든 식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소매로 식품을 판매하여 라벨을 붙여야 하는 업체는 해당 식품의 포장에 이를 표기해야 한다. GMO가 아닌 ‘생명공학’ 식품으로 표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Bio-engineered’ 또는 ‘BE Foods’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표기법은 다양하다. 문구·심벌·전자, 디지털 링크(QR코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 또는 작은 포장 제품의 경우, 전화번호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다만 식품의 재배·수확 또는 유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유전물질이 식품에 포함되는 경우, 유전물질이 5%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GMO 라벨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GMO 작물을 원료로 사용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도 라벨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전자



USDA의 GMO식품표기 라벨

변형 사료를 섭취한 가축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우유, 달걀 포함)도 제외된다.

-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25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체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본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규정의 실효성에 따른 찬반양론 존재

- 법안 발표 후 이에 대한 찬반양론도 분분하다. GMO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려는 취지가 라벨 표기 방법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벨 표기 방법이 너무 다양해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QR코드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표기 방법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 접하기 어려운 소비자들 또는 지역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 뿐만 아니라 제외된 식품에 따른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안의 개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